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감사회의 회의록

회차	정기 1차	일자	2023.03.06 20:30	장소	총학생회실(107관 208호)
----	-------	----	------------------	----	------------------

0 성원 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0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X	0	X	0	0	10/13

1 보고 안건

1. 중앙감사회의 진행 배경 설명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노력, 회계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한 올바른 회계 문화 형성 등 중앙감사위원회 설립 당시 목적과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 단위의 자치권을 침해, 감사의 중복, 피감사기구에서 감사위원을 선별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해왔으며 학생사회 내 중앙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앙감사 체제의 순기능 및 장점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중앙감사회의를 구성하여 회비 사용의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단위 대표자 또는 단위별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중앙감사회의를 구성하고, 매 학기 초 중앙감사회의를 소집하여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중앙감사회의의 업무는 예·결산안 작성요령 및 인정 영수증 및 증빙서류, 매월 결산 보고 방식, 회계 감사 요령 등이 포함된 회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위별 회비 결산 내역을 검토하여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 논의 안건

1. 해당 학기 회계 가이드라인 작성 관련 논의

- 예·결산안 작성 요령, 인정 영수증 및 증빙서류, 매월 결산 보고 방식, 회계 감사 요령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논의

<예·결산안 작성 요령>

- 사전 논의하였던 9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방향을 토대로 진행
- 예·결산안 작성 요령 관련 : 1) 실제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사용하였던 예산안 및 결산안 양식 차용(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됨) 2) 부서별 계획안을 바탕으로 금학기 예산안을 작성하여 진행 위 두가지 방식을 제안함.
- 각 단위들의 현재 예·결산안 작성 방식 공유를 바탕으로 절충안 모색
- 간호대학: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안 작성 -> 사업 진행 후 결산안 작성, 단학대회 때 결산안 보고를 통해 감사 진행하는 방식
- 경영경제대학: 비대위 체제이므로 예산안 작성 양식 관련하여 특별히 전달 받은 바 없음, 사업 진행 후 한번에 영수증 취합하여 엑셀로 정리하는 방식

- 사범대학: 예산안과 결산안은 대략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단학대회 이전 자료 준비하며 결산안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하는 방식
 - 사회과학대학: 예·결산안 작성 관련 인수인계 받은 바 없음
 - 약학대학: 예산안 관련해 공식적인 형식은 없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당 학기의 대략적인 예산안 편성 및 예비비 추가, 약학대회에서 작년 결산안 검토/ 해당년도 예산안 검토, 영수증 요청받으면 공개하는 방식
 - 예술대학: 예산안과 결산안은 대략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결산안은 만들어진 서류에 사업명, 거래일시, 거래항목, 단가, 배송비, 비고 잔액 등을 기재하여 월별로 카피로 공지(대부분 학생 가입되어 매달 결산안 올림), 영수증 증빙은 모으긴 하지만 따로 올리진 않는 방식
 - 인문대학: 내부 논의로 예산안 산정, 단학대회에서는 양식에 따라 결산안에 월별/부서별 입금 내역과 잔액, 영수증 등 수집하여 공개하는 방식
 - 통일공대: 운영위원회에서 국장 인준 시 예정 사업 보고 후 통일공대 학생회 내에서 보고한 사업을 토대로 예산안 작성, 작성한 예산안 운영위원회 검토 후 공학대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안 확인, 매달 카드뉴스로 결산안 공개하는 방식
- 학기 초 작성되는 예산안과 학기 중 사용되는 결산안에 대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부분 단위에서도 이해함, 중앙감사위원회의 문제점 소속 단위가 아닌데도 감사 불가 영향받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님,
- 통일공대: 중감위에서 진행하였던 전년도와 비교하는 예산안 방식은 예를 들어 지난 22-2학기에는 부분 대면 학사였기에 현재와는 사업 자체에 차이가 있고,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여 편성하는 것도 모호하여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회장: 전년도와 비교하여 행사 진행 상황이 바뀌는 것에 동감하지만 1안과 2안 중 확정하는 것 아니고 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방안들 모두 마련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으로써 각 단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통일공대: 그래도 1안의 방식은 들어가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함
- 예술대학: 통일공대의 의견에 동의함, 많은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19년도와 견주어 봤을 때도 물가차이로 인해 참고 불가하여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음. 전년도와 비교하는 방식은 내후년 정도부터 가능할 듯
- 총: 제안드린 1안의 방식을 현재 약학대학에서는 사용하므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면 1안이 포함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 약학대학: 이전 자료 참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필요하기 때문임, 사업에 대략적인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편성하고 예비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예산안 작성에 있어 회계상 크게 문제 있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음
 - 총: 중앙감사위원회 문제가 감사기구지만 강제성 및 징계권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음. 중앙감사회의 마찬가지로 구속 및 징계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것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두 항 모두 기재하게 하여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
 - 통일공대: 예산안 작성 방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입장에서 잘못의 유무 판단할 때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잘못될 것 같다는 의미로 얘기함
 - 총: 추가적인 의견 없으면 두가지 방안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회의 내용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의견 있다면 이어서 논의

<결론>

[예·결산안 작성 요령]

1) 실제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사용하였던 예산안 및 결산안 양식 차용(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 2) 임기 초 부서별 사업 계획안을 바탕으로 금학기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식

<인정 영수증 및 증빙 서류>

- 인정 서류 및 영수증 관련 :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하던 서류 및 영수증 종류를 차용하여 인정하는 것을 제안

*인정 서류 및 영수증 목록

-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⑤ 구매영수증 ⑥ 간이영수증

- 총: 추가적으로 각 단위에서 이 외에도 인정하는 종류의 서류가 있는지 질문
- 통일공대: 간이영수증은 보통 시장 등 카드 리더기가 없는 경우 사용하는데, 상호명, 구매자명, 대표명 등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음
- 부총: 6번 항목이 송금 내역 캡처만 하면 성명만 보이고 관계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송금 받는 자가 거래 관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 되어야 할 필요
- 간호대학: 단위 내에서 회계내역 상으로 이체한 경우 이체한 캡처도 공개 요청 있었음, 이체 받는 주체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함
- 통일공대: 단순 송금의 경우, 거래 관계자임을 최소한이라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총학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문
- 총: 총학은 단순 송금하는 건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항상 요청하여 증빙함. 간이영수증은 항목도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 이번에 정하면 좋을 듯. 단순 송금 내역일 때는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투명한 회계에 도움될 듯함. 거래명세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아 이를 간이 영수증으로 취급하면 될 듯
- 통일공대: 사업자가 있을 때는 거래명세표가 항상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나 대회 참가비와 같이 사업자 없는 경우에는 송금 받는 자가 관계자임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함
- 부총: 10차 중운위 회의 때 나온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으로써 이체자분 이름과 계좌번호를 포함한 포스터 등을 제출하여 관계자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 통일공대: 송금받는 사람의 확실한 신분과 관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추가 필요함

- 총: 정리) 간이 영수증을 하나의 항 (거래명세표)라는 말을 추가하고 7번째 추가 조항을 만들어 '단순 송금 시, 송금 받는 자가 거래 관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이라는 새로운 조항 추가할 것을 제안(간이영수증은 사업자가 있는 거래명세표로 동일시, 사업자가 없는 단순 송금 시를 고려하여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

ex) ⑥ 간이영수증(거래명세표) ⑦ 단순 송금 시, 송금 받는 자가 거래 관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 부총: 6번 항목의 번외로 제안한 7번 조항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 7번 조항으로 넣을 경우 1~5번 항목과 효력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가 되며 간이 영수증 자체를 거래명세표라는 단어로 바꿀 것을 제안함
- 경경대: 단순 송금할 때는 다른 항목보다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이므로, 각 국대에서 사업 명칭과 행사 이름을 같이 명시하면 더 확실히 되지 않을까 생각함

- 부총: ⑥ 간이영수증(거래명세표)으로 하고 거래명세표도 어려울 경우 송금 내역으로 하되 관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길 제안함

<결론>

[인정 영수증 및 증빙서류 목록]

-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⑤ 구매영수증 ⑥ 간이영수증(거

래명세표) 단, 단순 송금 시 송금 받는 자가 거래 관계자임을 증빙할 자료를 필히 첨부한다.

<매월 결산 보고 방식>

-단위별 회계 내역 공개 현행 방식

예술대 : 네이버 카페를 통해 회계 내역 공개 논의 중

인문대 : 인문대 대표자 회의 혹은 단학대회에서 회계 내역 공개

사범대 : 학생회비 사용할 때마다 단운위 보고 및 단학대회 때 감사

사과대 : 단학대회에서 검토 및 회계내역 SNS로 매월 공개

경경대 : 회계내역 SNS로 매월 공개

*단위별로 현재 회계 내역 공개 시기 및 방식이 회칙 뿐만 아니라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이를 최소한으로 회칙화 함으로써 통일화할 것을 제안

- 단위별로 매월 공개 의무 혹은 아예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단위에 대해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에서 회칙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권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간호대학: 상시, 경경대: 매월 초 전월 결산내역 공고, 사범: 필요 시 단운위의 제안으로 공개, 약학: x, 예술: x, 통일공대: 매월 사무국 제안으로 공개, 총: 매월 초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공고

- 총: 회계 내역에 대한 의무는 총학생회만 갖는 상황, 회계 내역 공개에 대한 내용 자체가 회칙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위에 한하여 회원 또는 운영위 제안이 있을시 공개로 회칙 제정할 것을 제안 드림

- 약학대학: 약학대회에서 공개, 회칙상 명시되었지는 않지만 회원 요청 시 회계 내역 공개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경우 없었음

- 예술대학: 각 단위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일된 한가지 방식으로 결산 내역을 보고할 시 어려움이 발생 가능

- 총: 각 단위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기준으로 권고 정도의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공개할 수 있도록 회칙화 한다.' / 회칙상 명시되지 않은 단위는 이번 학기 회칙 재정립 필요

<결론>

매월 결산 보고 방식 :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공개할 수 있도록 회칙화 한다.

<회계 감사 요령>

[감사요령 2가지 제안]

1. 정기 감사 : 회계 감사 관련하여 조항으로 회칙화 된 단위는 간호대 외에는 없는 상황임. 다만, 전학대회(또는 단학대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기에 이를 정기 감사로 여길 것을 제안

2. 특별 감사 : 학부 재학생이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

- 통일공대: 특별감사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질문

- 총: 중앙감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 단위가 다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회원이 아니므로 단과대 운영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을 제안

- 부총: 단학대회 결과는 회원들에게 공개되지만 특별감사를 진행할 경우 공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총: 특별감사 종료 24시간 이내로 온라인으로 결과 공개할 것을 명시할 필요

<결론>

[회계 감사 요령]

1. 정기 감사 : 전학대회(또는 단학대회)에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 이를 정기 감사로 여긴다.

2. 특별 감사 : 학부 재학생이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단, 특별 감사 종료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 단위별 회비 결산 내역 검토

- 중앙감사회의에서는 서로 단위가 다르므로 각 단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으므로 각 운영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
- 총학생회: 총학생회 결산은 10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간호대학: 검토 완료, 지적은 없었지만 증빙서류 등의 기준은 중운위에서 결정된 내용 조금 더 따르자는 의견, 송금 내역 등 반영해서 진행하자는 의견, 줌 프로 라이선스의 경우 달러 표기와 실제 결제금액이 상이하여 질의 진행하였음
- 경영대: 특이사항은 없었고 카드뉴스로 회계내역 공개 시에 회계담당분이 실제 통장 잔액 캡처해서 공개하자는 의견 있었음
- 사범대학: 결산내역 공개 문제 없음, 기간이 짧아서 사용내역이 10개 이내였고 단운위에 공유는 하지만 제대로 검토되는지는 의문
- 사회과학대학: 내역이 인수인계 위주라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 약학대학: 12월부터 임기라 기말 간식 행사, 새내기 환영 행사, 국가고시 응원 내역 등만 엑셀 정리하여 공개, 특이사항 없음
- 예술대학: 검토하였고 매월 회계 내역 카페로 업로드 완료함
- 인문대학: 인수인계 진행중
- 통일공대: 검토 완료하였고 결산 내역 검토 과정에서 타 단위에 대한 감사권이 없으므로 단위별 회비내역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할 듯함
- 총: 해당 내용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다음 주부터 진행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학기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

3 의결 안건

1. 1번 논의안건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1학기 회계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10	10	0	0	가결

2. 2번 논의안건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1학기 단위별 회계결산내역 (2월 28일 기준) 검토를 마친다.

재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10	10	0	0	가결

4 기타 안건

- 통일공대: 중앙감사회의 이름에서 ' 감사 '와 ' 회의 '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충돌하므로, 전학대회 때 ' 중앙 회계/사무 회의 ' 등의 이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총: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의, 중앙감사회의 구성원 자체가 피감사자와 감사자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회칙개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중앙감사위원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회의이다 보니 회칙 체계화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회칙 또한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